

국방상호조달협정 기체결국 협정문 비교 연구 -일본, 호주 협정문을 중심으로-

고은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 Comparative Study of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MOU Texts: Focusing on Agreements between Japan and Australia

Eun-Mi Go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요약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대한 논의 개시'를 언급한 이래,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가장 최근에 체결된 리투아니아 협정문을 기준으로 국방상호조달협정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일본과 호주의 협정문안을 비교분석하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상 시 착안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협정 협상 시 국내 방위산업 역량과 한미 기술협력 가능성 식별을 통한 협정 적용범위 조정 및 국익 보호를 위한 구체조항 삽입 등 협상전략 수립, 국내 법, 제도를 준수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협정문안 도출, 협정의 이행, 정례적 검토, 문제해결 등을 위한 매커니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방산업체가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이해하고,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에 대한 준비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중 최초로 협정문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ROK-US Summit's joint statement in May 2022, which initiated discussions on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DP MOU),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establishment of a South Korea-US RDP Agreement. In response to this increasing atten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e and the significant elements of the most recent RDP Agreement, focusing mainly on the agreement with Lithuania. This study also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reements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Australia to gain insights that may be beneficial for negotiating the South Korea-US RDP Agreement.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South Korean negotiation team to identify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capabilities and potential areas for ROK-US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adjust the agreement's scope and strategically incorporate specific provisions. It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a flexible agreement that complies with domestic laws and systems while maintaining the potential for necessary modifications. Emphasis is also placed on establishing precise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gular review, and problem resolution within the agree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s that can assist domestic defense industries in better understanding the ROK-US RDP Agreement and discovering business opportunities. As the first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RDP Agreement texts concerning establishing the ROK-US RDP Agreement, this study offers insights, setting a foundation for successful negotiation strategies.

Keywords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RDP MOU, Defense Industry, Defense, Procurement

*Corresponding Author : Eun-Mi Go(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email: eunmigo90@krit.re.kr

Received May 2, 2023
Accepted June 2, 2023

Revised June 1, 2023
Published June 30, 2023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언급한 이래,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1].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은 198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처음 제의한 이래 2010년대까지 다수의 정책연구,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온 사안이다[2,3].

최근에는 국내 방위산업(이하 방산) 시장의 성숙도와 이로 인한 대미 방산수출 시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3].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마련의 106-4번 실행과제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포함하며, 다시 한 번 양국 간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제반 검토와 준비를 추진 중이다[3,4].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국방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이라는 체결효과가 나타나는 협정으로 국내 방산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협정 체결 준비가 필요하다[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상호조달협정문 분석을 통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기체결국의 협정문안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정문 도출 및 협상 시 적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준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28개 기체결국 중 리투아니아의 협정문을 기준으로 문안의 양식과 구조를 살펴보고, 일본과 호주의 협정문안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리투아니아의 협정문을 기준으로 양식과 구조를 검토한 이유는 최근 체결형식의 경향성과 최신 협정문을 기준으로 협정의 양식과 주요내용을 파악하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해각서(MOU) 또는 협정(Agreement)의 체결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00년대에 체결한 8개국 중 5개국이 협정 형식을 선택하였다. 최근 체결형식 경향성을 고려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또한 협정 형식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정 형식으로 체결된 협정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Table 1은 현재까지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기준으로 체결년도 및 형식을 정리한 표이다. 또한, 홍영식 등(2018)과 이소영(2020)은 연구 당시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정문을 통해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론을 취하였다[5,6]. 상기를 고려하여, 본 연구 기준 가장 최근에 체결한 협정형식의 리투아니아의 협정문을 통해 협정문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본과 호주의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이유는 첫째로 일본은 2016년, 호주는 1995년에 협정을 체결하여 체결년도가 약 2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른 협정내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두 협정문은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파생된 다양한 조항에서

Table 1. List of Countries that have signed RDP-MOU or Agreement [7]

No.	Country	Start Year	Type	No.	Country	Start Year	Type
1	Canada	1963	MOU	15	Sweden	1987	MOU
2	Switzerland	1975	MOU	16	Israel	1987	MOU
3	United Kingdom	1975	MOU	17	Egypt	1988	MOU
4	Norway	1978	MOU	18	Austria	1991	MOU
5	France	1978	MOU	19	Finland	1991	Agreement
6	Netherlands	1978	MOU	20	Australia	1995	Agreement
7	Italy	1978	MOU	21	Luxembourg	2010	MOU
8	Germany	1978	MOU	22	Poland	2011	MOU
9	Portugal	1979	MOU	23	Czech Republic	2012	Agreement
10	Belgium	1979	MOU	24	Slovenia	2016	Agreement
11	Denmark	1980	MOU	25	Japan	2016	MOU
12	Türkiye	1980	MOU	26	Estonia	2016	Agreement
13	Spain	1982	Agreement	27	Latvia	2017	Agreement
14	Greece	1986	Agreement	28	Lithuania	2021	Agreement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협정 적용 범위에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협정 체결 이후 미-일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에 성과를 보였다[1,8]. 반면, 호주는 협정 적용범위에서 연구개발을 제외하여 최초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 시간변화에 따른 문안의 변화, 적용범위를 포함한 주요조항 간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두 협정문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한미 협정 문안 도출 및 협정 협상 시 착안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본론

2.1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선행연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이뤄진 바 있다[1-6,8].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결의 타당성 및 체결 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6]. 이소영(2020)은 국방상호조달협정과 미국산우선구매법(BAA: Buy American Act), 미국 조달규정 및 국방조달규정과 연관성 분석 등 법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다[6].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 국방상호조달협정문안 자체를 접근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 협정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협정문의 형식과 구조를 설명한 경우이다. 홍영식 등(2018)은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자 당시 가장 최근에 체결했던 미-일 협정문의 구조와 장별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5]. 이소영(2020) 또한 협정의 주요내용 이해를 위해 연구 당시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된 미-라트비아 협정문 설명표를 제시하였다[6].

또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추진방향과 협상방향 등을 제시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유규열(2008)은 협상전략, 협정체결 추진형태, 단계별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였다[2]. 최근에는 최기일(2022)이 다양한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1].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특징, 우리나라의 체결 필요성 및 체결효과 등을 분석하여 협정체결 준비 이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정체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협정문안 도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나라의 국방상호조달

협정 체결 준비에 필요한 한미 협정문안 도출, 협상전략 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소영(2020)의 미-라트비아 협정문 분석에 이어 미-리투아니아 협정문 분석을 통해 협정문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최신화하였다. 또한, 주요 기체결국인 일본과 호주 협정문 비교분석을 통해 협정문 도출과 협상 시 착안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2 리투아니아 협정문을 통해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구조와 주요내용

미국-리투아니아는 2021.12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형식 중 가장 최신 협정문안이다. 리투아니아 협정문 구성은 대부분의 협정문 구성과 같이 전문(Preamble), 제1장~10장, 체결 당사자 간 서명으로 크게 1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Preamble)에서는 협정의 체결 목적과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 토대 위에 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사항을 기술하였다. 협정의 체결 목적은 합리성(Ration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상호군수 지원 촉진 등이며, 기대사항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발전, 국방기술 교류 촉진,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가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국방물자 구매에 차별적 장벽 제거 등이다.

제1장 적용범위(Applicability)에서 리투아니아는 연구개발, 국방물자, 국방서비스를 협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건설 및 건설계약으로 제공된 건설물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2장 원칙(Principles Governing Mutual Defense Procurement Cooperation)에서는 상호 국방조달을 위한 구매장벽 제거, 국방조달 기회에 있어 양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 조달정보 제공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다.

제3장 절충교역(Offsets)에서는 절충교역이 양국의 국방산업 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제4장 관세 및 제세(Customs, Taxes, and Duties)에서는 양국의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가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주의 하에 동 협정이 적용되는 국방조달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국 제품의 입찰가를 평가하고, 관세와 제세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하였다.

제5장 조달절차(Procurement Procedures)에서는 양국 입찰 참가자에게 평등한 조달기회 공고, 탈락한 업체에 대한 통지 및 결과 설명, 불만사항 해결절차 등 공정한 국방조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하였

다. 제6장 업체참여(Industry Participation)에서는 양국 당사자가 협정체결 및 협정내용을 자국 기업에 알리는 책임을 가지며, 사업기회 발굴은 양국 업체의 책임임을 밝혔다.

제7장 보안, 정보공개, 방문(Security, Release of Information, and Visits)에서는 기밀정보는 미-리투아니아 보안협정에 따라 취급해야하며, 적합한 보안인가가 있는 경우 유관 기관 및 실험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고 계약자의 산업시설 방문은 허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8장 이행 및 행정(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은 동 협정의 이행 책임기관 및 연락담당 지정, 정기적 검토 및 회의가 개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제9장 부속서 및 개정(Annexes and Amendments)에서는 본 협정에 대해 부속서가 추가될 수 있으며, 협정 및 부속서는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제10장 발효, 효력기간 및 종료(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에서는 양국 당사자간 서명후 10년간 유효하고, 협정의 종료가 유효기간 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 당사자의 서명으로 협정문이 종결되었다. Table 2는 미-리투아니아 협정문의 장별 주요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리투아니아 협정문 분석을 통해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국방산업의 합리성, 표준화, 상호운용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국방조달의 차별장벽 제거와 양국 간의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원칙, 조달절차, 절충교역, 기밀정보의 처리, 행정적 이행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협정임을 파악하였다.

2.3 일본 및 호주 협정문 비교분석

리투아니아 협정문을 통해 가장 최근 협정 형식의 협정문의 구조와 장별 주요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호주 협정문은 장별 주요내용과 문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호주와 일본 협정문의 한글 번역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의 번역본을 활용하였다. 비교분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여러 협정문안 비교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 비교연구 방법론을 설정하기 보다는 대상 협정문을 설명하고, 비교분석을 희망하는 챗터 또는 구문별로 국가별 협정문 비교를 수행했던 방식을 차용하여 협정문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9-11].

일본은 도입(Introduction), 호주는 서문(Preamble)으로 협정문을 시작하였다. 두 협정문은 미국과 이전에 체결한 안보협약을 통한 파트너십을 상기하며, 우호관계 발전, 국방기술 교류 증진, 상호국방조달 촉진 등을 기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은 "이 협정이 국제협약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본 조항

Table 2. Structure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concerning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Chapter	Summary
PREAMBLE	Promotion of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interoperability, and mutual logistics support throughout defense procurement
ARTICLE 1. Applic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urements of defense supplies and defense services are included
ARTICLE II. Principles Governing Mutual Defense Procurement Cooperation	Basic principles governing mutual defense procurement cooperation
ARTICLE III. Offsets	Discussion to limit adverse effects on the defense industry
ARTICLE IV. Customs, Taxes, and Duties	Evaluation of offers for defense procurement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considering duties, and waiver from customs and duties
ARTICLE V. Procurement Procedures	Ensuring fair defense procurement processes
ARTICLE VI. Industry Participation	Each Party has a responsibility to inform its industry enterprises of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 Security, Release of Information, and Visits	Defin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security measures
ARTICLE VIII.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Designation of responsible agencies and contact points, regular reviews, and meetings
ARTICLE IX. Annexes and Amendments	Addition of annexes and modification of the Agreement and annexes by agreement
ARTICLE X. Entry Into Forces, Duration, and Termination	Effective for 10 years after signature and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contracts concluded during the effective period
SIGNATURES	Signatures of Each Party

들은 동 협정의 조항에 의거 양 당사자로 하여금 모든 국방상호조달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2016.6.3.자 국방상호조달협정에 관한 각서교환에 의해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양 당사국의 국방조달 협력을 위한 법적 및 절차적 틀을 설정한 반면, 호주는 “각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등 ‘DESIRING to’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법적구속력을 약속하기보다는 양국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외교적 어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장 적용범위에서는 일본은 연구개발, 방산물자를 포함한 물품조달 및 방산물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조달을 포함하고, 건설 및 건설계약으로 제공된 건설물자는 제외하였다. 반면, 호주는 Advanced Purchasing method를 요구하는 조달, 미국은 간소 조달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조달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양 정부의 상호 판단에 따른 그러한 규모의 조달을 범위에 포함하여 협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유연성을 나타냈다. 일본과 달리 연구개발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다.

2장 원칙에서 일본과 호주는 상대국 기업에게 국방조달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고, 독점 기술데이터에 대한 정보보안 등 상호 국방조달의 원칙을 정하였다. 호주는 간결하게 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보호, 정보 및 통계 데이터 교환의 절차와 지침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호주와는 달리 “상대국에서 생산된 방산물품 또는 상대국에 설립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달 및 공동생산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상대국의 업체가 자국산구매 조건의 입찰에 최저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한 경우, 양 당사국은 자국산구매 조건을 면제한다”를 포함하며 공동생산에 대한 장벽 제거와 자국산구매의 면제 조건을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국 중 한 나라 정부의 수출통제 법과 규정에 적용받는 수출은 그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 협정의 어떤 내용도 개별 협력 프로젝트 협약 또는 계약서 상에 필요한 수출통제 조항 이행을 막는데 인용될 수 없다” 문구를 추가하여 수출통제 준수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였다.

3장에서 일본은 절충교역(Offsets), 호주는 산업기반 유지(Maintenance of the Industrial Base)의 다른 제목을 사용하였으나, 세부내용은 절충교역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일본은 “동 협정은 절충교역을 규제하지 않는다”를

명시하며 절충교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호주는 “양 정부는 각국의 국가 안보 요구에 부합하는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각 정부의 책임임을 인지한다”는 각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4장에서 일본과 호주는 모두 관세와 제세를 다루었으며, 두 협정문 모두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가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이한 점은 호주와 달리 일본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관세 및 제세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5장 조달 절차에서 일본과 호주는 평등한 조달기회 공고, 입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입찰에 탈락한 기업 대상 사유 공지 및 불만사항 해결절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일본의 내용이 조달절차에 있어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호주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6장에서 일본은 업체참여(Industry Participation), 호주는 협정의 공표(Promulgation of Agreement)라는 제목으로 협정체결과 그 내용을 자국 기업에 알리고, 사업기회 발굴의 1차 책임은 각국의 기업에 있음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당사국들이 개별 사무소를 설치하여 상대국 기업들이 입찰정보, 필요 자격 및 문서 등 조달정보를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을 추가로 주문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호주는 정부 차원의 상대국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7장에서 일본은 보안, 정보공개, 방문(Security, Release of Information and Visits), 호주는 비밀정보와 수출통제(Classified Information and Export Controls) 제목 하에 일본과 호주가 각 미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기밀정보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일본은 호주와 달리 일반정보와 기밀정보를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정보보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와 승인을 받은 상대국 정부 직원의 유관 기관, 실험실, 계약자의 산업시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앞선 리투아니아의 협정문에서는 유사 문구에서 계약자의 산업시설의 방문에 대해 ‘허용하고 방해하지 말아야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 문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의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주는 금번장에서 각국의 기업들이 자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준수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8장 이행과 행정에서 일본과 호주는 본 협정의 이행과 행정적 책임을 위해 협정 이행 책임자와 연락담당관을 지정하고, 정례적 회의 개최를 정하였다. 위 내용과 더불어 일본은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에 변화가 발생할 시 협정 수정 필요성에 대해 공동협의하고 본 협정과 상충할 수 있는 서약은 자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양국의 국방조달환경 등 변화와 협정 간 잠재적 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호주는 협정의 지속적 이행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산 전문 직원의 상호 교류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점이 특이하다.

9장에서 일본은 부속서와 개정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본은 서면 결정을 통해 부속서 추가와 협정문 및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반면, 호주는 협정문 내에 부속서와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9장에서 효력기간과 종료(Duration and Termination)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내용은 일본의 10장 내용과 함께 설명하겠다.

10장에서 일본은 발효일, 효력기간 및 종료(Effective Date, Duration and Discontinuance)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협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교환각서가 발효되는 한 효력을 유지함을 명시하고, 협정문 내에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본 협정이 종료되어도 협정 유효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정하였다. 9장에서 호주는 협정의 서명으로 발효되어 10년간 유효하고, 10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며, 한 당사국이 서면으로 6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종료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일본의 협정문은 2016년 양해각서 형식으로, 호주는 1995년 협정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두 협정문은 약 20년의 시간 차이와 체결형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주요 목적과 내용, 기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장별 세부내용에서 일본과 호주의 협정문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강조사항 등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4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상 시 착안할 점

위의 호주 및 일본 협정문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측과 협정문 도출 협정 협상 시 착안할 점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협정의 적용범위 조정, 연구개발 협력 여부,

양국 업체 간 상생을 위한 구체방안 등을 협정문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협정 적용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와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호주 사례에 비추어, 국방물자 조달에 대한 구체적 적용범위 설정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며, 유규열(2008)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부분의 상호 국방조달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제외한 포괄적인 상호조달 협정의 체결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2]. 반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연구개발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 활성화를 통한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안할 수 있다[8]. 이 경우에는 일본 협정문 2장 원칙에서 소유권의 보호, 공동생산에 대한 장벽제거, 수출통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이 추가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장 원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항에서 우리나라의 국익보호와 강화를 위해 구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일본과 호주 협정문 모두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협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협정문 2장 원칙에는 당사국 정부의 수출통제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국내법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 조항을 한미 협정문안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아울러, 일본 협정문 8장 이행과 행정에서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의 후속 변경사항에 비추어 협정문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및 유관 법제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호주 협정문은 협정의 이행, 정기 검토, 수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호주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협정 이행 책임자 및 연락담당관 지정, 정례적인 회의 개최, 문제발생 시 적극적 해결 등 동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하여 협정문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 협정문 6장 업체 참여에서 당사국들이 개별 사무소를 설치하여 상대국 기업들에게 입찰정보, 필요 자격 및 문서 등 조달정보를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조항에서 착안하여 우리 국내 방산기업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 논문은 리투아니아 협정문을 토대로 국방상호조달협정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 및 호주 협정문을 장별로 비교분석하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문안 도출과 협정 협상시 착안할만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상기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협정문안 도출 및 협상 시 활용 가능한 구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협정문안의 구조와 주요내용은 체결형식과 상관없이 이미 상당 부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측 문안 준비 시 가장 최신의 협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리 협상단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국익을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과 한미 간의 협력 가능한 기술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정 적용범위 조정, 양국 업체 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 조항 제시 등 전략적 협상방안을 준비하여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협정문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국내 법, 제도와 부합되도록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협정문을 도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익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국내 법, 제도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과 앞으로의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 의무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협정을 검토, 수정하는 조항을 양립하도록 문안에 삽입하는 협상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연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은 호주 및 일본의 협정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협정의 이행, 정례적 검토, 수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협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특히, 일본 협정문을 고려하여, 국내 방산업체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이혜를 제고하고,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구상하고, 협정문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방안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연구 중 최초로 협정문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정문안과 협상에 활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28개 협정문 중 3개국 협정문 검토와 2개 협정문간 비교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협정문 비교분석 결과가 나오고, 여러 방법론을 활용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정문 도출과 협상 준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G. I. Choi, "A study on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29, No.2, pp.45-56, 2022.
DOI: <http://doi.org/10.52798/KADIS.2022.2.4>
- [2] K. Y. Lyu, "The Drive Direction of the ROK-US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followed by the ROK-USA FT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Vol.33, No.2, pp.1-24, Apr. 2008.
- [3] D. H. Shin, "A study on the Analysis of Defense Export Competitiveness for Korea-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Defense Technology, Vol.2, No.3, pp.5-10, 2020.
DOI: <https://doi.org/10.52682/ikidt.2020.2.3.005>
- [4] Editorial Department, "Launch of an Interagency TF to Promote the R.O.K-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RDP-A", p.165, Defense & Technology, 2022, pp.15-16.
- [5] Y. S. Hong, M. K. Kim, Y. H. Sohn, "A study on Expected Impact of KOR-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25, No.4, pp.209-234, pp.5-30, 2018.
DOI: <https://doi.org/10.18107/japs.2018.25.4.001>
- [6] S. Y. Lee, "Analysis of Buy American Act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Korea Law Review, Vol., No.98, pp.199-241, 2020.
DOI: <http://doi.org/10.36532/kulri.2020.98.199>
- [7] DOD, International Contracting, RDP and Acquisition Policy, MOU, 2023, Available From: <https://www.acq.osd.mil/asda/dpc/cp/ic/reciprocal-purchase-mou.html> (accessed May. 24, 2023)
- [8] Hwa YU, RDP MOU, the FTA in defense?, Korea JoongAng Daily, Apr. 2022, Available From: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4/12/opinion/columns/RDP-Mou-FTA/20220412195022552.html> (accessed May. 24, 2022)
- [9] J. Y. Lee,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Repor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pp.41-93.
- [10] J. D. Kim, J. H. Eom, Analysis on the Service and Investment Chapters of Korea's FT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US FTA vs. the Korea-EU FTA,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pp.127-153.
- [11] S. M. Lee,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China Free Trade Agreement -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Research Repor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pp.37-97.

고 은 미(Eun-Mi Go)

[정회원]



- 2013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문학사)
- 2015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방위산업, 방산수출